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

www.namwon.go.kr

섰	기관의 장
람	

제38호 2016. 9. 9(금)

공고

0	남원시	공고 저	2016 -	- 1126호	숲멀제	재해위험저수지	정비사업	시행계획	및 보상계	획공고	•••••	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	1
0	남원시	공고 저	2016	- 1136ই	2016년	8월 수시분 지	방소득세 .	고지서 공	시송달				8
0	남원시	공고 저	2016-	1151호	남원시	흥부골자연휴양	림 관리 및	ļ 운영에	관한 조례	및 시행규칙	일부개정안	입법예고	10
$\circ$	나의지	고고 기	0016	. 1152 중	나의지	츠챤괴 ス레 이	旦 川 저 ス ヹ	J(아) 이 바	에고				26

회					
_,`					
람					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 공고 제2016-1126호

시

# 숲멀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보상계획공고

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,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숲멀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물건(토지 등)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내용을 열람하시고,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9월 9일

# 남 원 시 장

#### 1. 목적

- 가. 농지이용의 불편함 해결과 안전한 영농을 위하여 숲멀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정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.
- 나. 숲멀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경쟁력 제고

#### 2. 사업내용

사업명	위치			ત્રી બે ગો ગો	사업비	사업내용	사 업
/ነዝሪ	시군	읍면	리	사업기간 (백만원)		শ রপাত	시행자
숲멀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	남원시	운봉읍	권포리 일원 (권포)	2016. 7월~ 2017. 7월	1,992백만원 정도(공사비, 보상비 등)	-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개소	남원시

※ 물건(토지 등) 보상시기는 별도(개별) 통보예정이고, 사업내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.

### 3.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

가.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29번지외 13필지 및 관련 권리 일체와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모두(조서내용의 소유자와 변동 될 수 있음)

나.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되며, 남원시홈페이지 (http://www.namwon.go.kr) 참여와 알림 - 시정소식 - 남원시 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(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은 별도로 개별 통지)

#### 4.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기간 : 2016년 09월 09일 ~ 2016년 10월 08(30일간) 09:00~18:00

- 나. 열람 장소 및 이의 신청방법
  -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담당(063-620-6387)

시

- 열람 후 이의가 있는 물건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\* 단, 평일에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### 5. 보상시기 : 2016년 9월(개별통보)

- 대상물건을 2개의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

#### 6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하여 보상합니다.

나. 보상절차 :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(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) ⇒ 손실보상협의

⇒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통장 계좌 입금

다. 편입물건(사유토지) 내역 : 운봉읍 권포리 29번지외 13필지(세부내역은 별첨 참조)

#### 7. 기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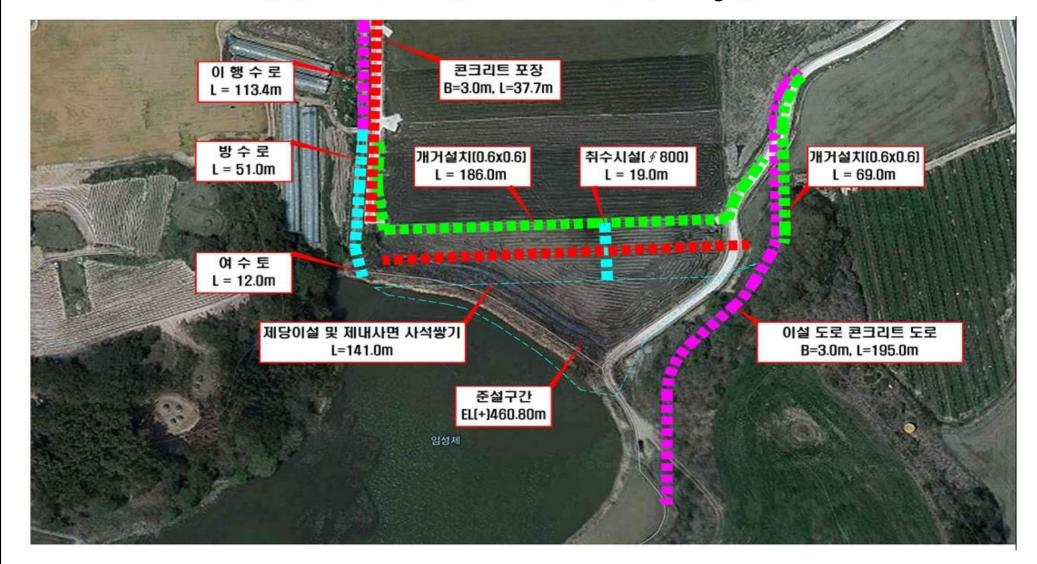
가. <u>본사업 시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 및 보상관련 세부 물건조서 열</u> <u>람 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</u>하시기 바라며,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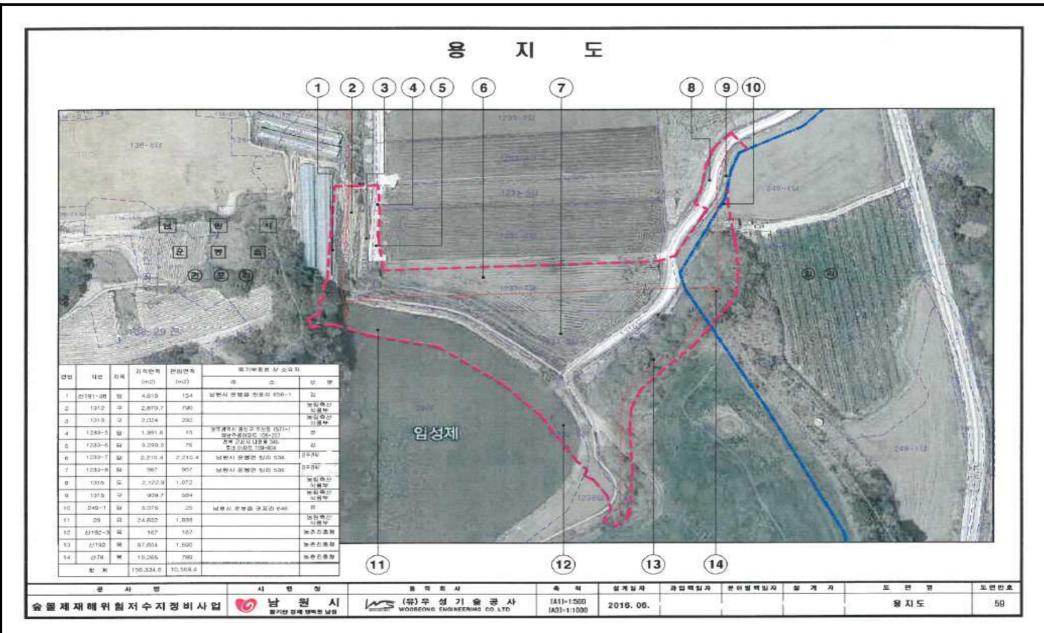
나.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, 보상금액, 보상절차, 보상협의 및 구비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개별 통지 할 예정입니다.

다. 보상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개별통지는 현재 확인된 주소로 통지하게되며, 주소,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서 갈음 합니다.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담당(주소 : 남원시 시청로 60, 전화 063-620-638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# 숲멀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계획 평면도





# 사업대상부지 용지조서(숲멀제)

구	2	로지소재	지	지	번	지목	용지매수면	적(m')	로 지 소 유 자		
뷘	시군	읍면	리동	본번	부번	공부상	공부상면적	편입면적	주 소	성 명	비고
1	남원	운봉	권포	산191	38	임야	4,615	154	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*****	김**	
2	남원	운봉	권포	1312		구거	2,870.7	790		농림축산식품부	
3	남원	운봉	권포	1313		구거	2,024.0	292		농림축산식품부	
4	남원	운봉	권포	1233	5	답	1,391.6	15	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****-1 (하남 주공아파트 ******)	정**	
5	남원	운봉	권포	1233	6	답	3,290.3	76	전북 군산시 나운동 345 (롯데아파트 ***동 ***)	강**	
6	남원	운봉	권포	1233	7	답	2,210.4	2,210.4	남원시 운봉읍 임리 5**	진주****공파 **면임리대종중	
7	남원	운봉	권포	1233	8	답	967.0	967.0	남원시 운봉읍 임리 5**	진주****공파 **면임리대종중	is a
8	남원	운봉	권포	1316		도로	2,122.9	1,072.0		농림축산식품부	
9	남원	운봉	권포	1315		구거	909.7	584		농림축산식품부	
10	남원	운봉	임리	249	1	답	3,075.0	25.0	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6***	<del>⊆</del> **	
11	남원	운봉	권포	29		유지	24,822.0	1,838		농림축산식품부	
12	남원	운봉	권포	산192	3	목장용지	167.0	167.0		농촌진홍청	
13	남원	운봉	권포	산192		목장용지	97,604.0	1,590.0		농촌진홍청	
14	남원	운봉	임리	산78		목장용지	10,265.0	789.0		농촌진흥청	
	1	합계			12	14	156,334.6	10,569.4			e e

	검	토 (토	의 지소유	-자)	, ,	서	
제	목	숲멀제 저	H해위험 :	저수지	정비사업	수진 국	관런 검토의견
rl al al	토지소유자 성명(명칭)						
당사자	주소 (소유토지)						
토지소유자 및 주민, 농민 의견	※ 토지소유지	ㅏ 의견을 ←	수렴하여	검토후	사업을	추진 하	고자함.
기 타							
	의 안전관리 및 <i>&gt;</i> 보상에 관한 법률				•		
		2016.	•		•		

의견제출인 주 소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전화번호 :

# 남 원 시 장귀하

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시

	검		의 5민·주	견 (-민)	서		
제	목	숲멀제	재해위험	저수지 정	비사업 추진	] 관련 검	토의견
당사자	건의자 성명(명칭)						
3^r^r	주 소 (소유토지)						
토지소유자 및 주민, 농민 의견	※ 농민 및 주	주민들의 (	의견을 수	렴하여 검	토후 사업을	· 추진 하	고자함.
기 타							
	『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, 공익시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』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.						
		2016					

2016.

의견제출인 주 소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전화번호 :

## 남 원 시 장귀하

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남원시 공고 제2016-1136호

시

# 공시송달공고

2016년 0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 09. 09

남 원 시 장

1. 제 목 : 2016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16. 9. 9 ~ 2016. 9.23.

3. 납부기한 : 2016. 9. 30

4. 공시송달내용

2016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,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 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5. 공시송달내역 : 붙임

# 2016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

(단위:원)

납세자	납세자 번호	과 세 번 호	세액	송달사유	간주납기
권* 구	70***-****	140001-2016-08-2-***-1497	1,948,090	폐문부재	2016.9.30
홍* 기	761****-***	140001-2016-08-2-***-1482	344,950	수취인불명	2016.9.30
배* 순	60***-***	140001-2016-08-2-***-1243	1,173,610	폐문부재	2016.9.30
박* 운	72****-****	140001-2016-08-2-***-1405	1,048,740	폐문부재	2016.9.30
0 * 0	78***-****	140001-2016-08-2-***-1425	404,380	폐문부재	2016.9.30
강* 인	50****-****	140001-2016-08-2-***-1374	462,700	폐문부재	2016.9.30
남* 길	76***-****	140001-2016-08-2-***-1283	29,310	수취인미거주	2016.9.30
차* 호	68***-****	140001-2016-08-2-***-1289	15,880	수취인미거주	2016.9.30
박* 철	85***-****	140001-2016-08-2-***-1395	161,370	수취인불명	2016.9.30

남원시 공고 제2016 - 1151호

시

#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『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및 『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』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09월 09일

## 남 원 시 장

#### 1. 개정이유

가.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과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업무 협약에 따른입장료, 시설이용료의 할인사항 신설 및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고자 함.

나. 「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『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

- 가.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세부 할인 규정 삭제 및 신설 (안 제17조)
  -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할인 신설 (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할인)
- 나. 상위법에 명시된 입장료 면제 조항 삭제 및 신설 (안 제22조)

다. 시설이용요금 개정 (안 별표 4)

시

라.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하여 용어의 뜻 명확화

『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』

- 가. 휴양림의 이용시간 조정 (안 제2조)
- 나. 법률 위임 없이 재정보증 보험가입 의무 부과한 규정 삭제 (안 제8조)
- 다.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하여 용어의 정의 명확 화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 산림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 번호
- 나. 의견 제출할 곳

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산림과 산림소득담당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(063-620-6704) 및 직접방문 등

### 4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과(☎063-620-648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

제출년월일: 2016. 8. . 제 출 자:남 워 시 장

제안설명자 : 산 림 과 장

#### 1. 개정이유

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과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업무 협약에 따른입장료, 시설이용료의 할인사항 신설 및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세부 할인 규정 삭제 및 신설 (안 제17조)
  -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할인 신설 (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할인)
- 나. 상위법에 명시된 입장료 면제 조항 삭제 및 신설 (안 제22조)
- 다. 시설이용요금 개정 (안 별표 4)
- 라.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하여 용어의 뜻 명확화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 나. 그 밖의 사항

- 1) 입법예고
- 기 간: 2016. 8. . ~ 2016. 9. .(20일간)
- 결 과:
- 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#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시설사용료"를 "시설이용료"로 한다.

시

제3조제8호 중 ""시설 사용료"란"을 ""시설 이용료"란"으로, "사용하는"을 "이용하는"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6호 중 "시설사용료"를 "시설이용료"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사용료"를 "이용료"로 한다.

- 제16조 중 "휴양림에 대한"을 "휴양림의"로, "사용료"를 "이용료"로 하고, 같은 조 중 "제 4 장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"를 "제 4 장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"로 한다.
- 제17조의 제목 "(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)"를 "(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사용료는"을 "이용료는"으로, "같으며 별표 4에 없는 시설은 별표 4에 없는 시설의 사용료에 따른다"를 "같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 중 "사용료"를 "이용료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1. 비수기에 시설물(숙박시설 포함)을 이용할 경우
-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"사용료"를 "이용료"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⑤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할인율은 별표 3, 별표 4에 따른다.

- ⑥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.
- 제18조제1항 중 "사용예약은 시설사용료"를 "이용예약은 시설이용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사용예정일"을 "이용예정일"로, "사용예정일"을 "이용예정일"로 한다. 제19조제2항 중 "사용료"를 "이용료"로 한다.
- 제20조의 제목 "(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)"를 "(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① 휴양림의 입장권 및 시설 이용권은 고정판매소에서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20조제2항 본문 중 "사용료"를 "이용료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사용료는"을 "이용료는"으로 한다.
- 제21조 중 "사용요금"을 "이용요금"으로 한다.

시

-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9.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
-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.
- 제24조 중 "사용료"를 "이용료"로 한다.
- 별표 3,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## **입 장 요 금 표** (제17조 관련)

(단위 : 원/1일)

구 분	어 른	청소년・군인	어 린 이	비고
개 인	2,000	1,500	1,000	
단 체	1,500	1,000	500	• 단체 : 20명 이상

[별표 4]

## **시 설 이 용 요 금 표** (제17조 관련)

시 설 명	구 분	이용기간	<u> </u>	금	비고
기 결 정	। <del>र</del>	기중기신	성수기	비수기	н  <u>л/</u>
	3~4인용 (23.76㎡)	1동/1일	60,000원	42,000원	
	5~6인용 (36.54㎡)	1동/1일	80,000원	56,000원	
숲속의 집	10~15인용 (66.05m²)	1동/1일	150,000원	105,000원	
	15~20인용 (82.85m²)	1동/1일	200,000원	140,000원	
오토캠프장		1일/1회	30,000원	21,000원	* 전기시설이 포함된 오토캠프장 5,000원 추가 징수
야 영 장		1일/1회	10,000원	7,000원	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시

_	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문	제1조(목적)
화・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3조	
및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남원	
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의 관리·	
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의5에 따	
라 휴양림 입장료 및 <u>시설사용</u>	시설이용료 -
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	
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3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··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"시설 사용료"란</u> 별표 4의	8. <u>"시설 이용료"란</u>
시설물을 <u>사용하는</u> 사람에게	<u>이용하는</u>
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	··
9. ~ 15. (생 략)	9. ~ 15. (현행과 같음)
16. "휴양림 현장책임자"란 휴	16
양림 관리 · 운영자의 명을 받	
아 휴양림 안내, 시설물 관	
리, 입장료 및 <u>시설사용료</u> 징	<u>시설이용료</u>
수 등 휴양림 관리 · 운영업무	
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	
는 고용인을 말한다.	
17. (생 략)	17. (현행과 같음)

보

제4조(휴양림 관리·운영) (생략)

시

- ②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및 시설 <u>사</u> 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관 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- 제16조(수탁 휴양림의 입장료 등 징수)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 휴양림에 대한 입장 료 및 시설 <u>사용료</u>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 4 장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제17조(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) ① 입장료 및 시설 <u>사용료는</u> 별 표 3 및 별표 4와 <u>같으며 별표 4</u> 에 없는 시설은 별표 4에 없는 시설의 사용료에 따른다.

- ②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 <u>사용료</u>를 할인할 수 있다. 다만,성수기에는 예외로 하다. 1. 시설물(숙박시설 포함): 20 <u>퍼센트 할인</u>
- 2. 5일 이상 시설물(숙박시설 포함) 장기 사용시 : 30퍼센

제4조(휴양림 관리·운영) (현행 과 같음)
② <u>이용료</u> -
 제16조(수탁 휴양림의 입장료 등 징수)
<u>이용료</u>
제 4 장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제17조(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) ① 이용료는
<u>E.</u> .  (2)
 <u>이용료</u>
<ol> <li>비수기에 시설물(숙박시설 포함)을 이용할 경우</li> </ol>

<삭 제>

트 할인

- 3. 숙박시설물 사용할 때 : 입 <삭 제> 장료 및 주차료의 50퍼센트 할인
-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 및 시 설 사용료를 할인할 경우 할인 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 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④ 유치원·초·중·고·대학 생들이 20명 이상 단체로 휴양 림 이용시 할인기간에는 숙박시 설 사용료를 50퍼센트까지 할인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<u>신</u>설>

용예약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 된 것으로 본다. ② 제1항의 예약을 해약할 경우 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하여

-- 이용료----

<삭 제>

- ⑤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 설 이용료의 할인율은 별표 3, 별표 4에 따른다.
- ⑥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입장료 및 시설이용 료를 할인할 수 있다.

제18조(예약 및 해약) ① 시설 사 제18조(예약 및 해약) ① --- 이 용예약은 시설이용료-----

(2) --------- 이용예정일 -----

야	하ㅁ	月,	<u>사용</u>	예정	성일	전전	난날끼
ス	한	해	약은	예 '	약금	전	액을,
전날	建 克	한 경	해약은	<u>a</u>	계약 <sup>-</sup>	금의	50교
센!	트를	환	불한1	다.			

시

제19조(입장권의 광고사용) ① 제 (생 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사 용을 하려는 자와 광고의 내용, 기간, 규격, 사용료 등을 협 의 · 결정한다.

수) ①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 설 사용료 징수는 고정판매소에 서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을 판 매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 용료 징수는 관련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 다만, 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 마다 드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한다.

제21조(요금표 등 게시) 휴양림 저 관리 · 운영자는 요금표를 이용 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

<u>이용예정</u>	<u> 성일</u>	
제19조(입장권의	광고사용)	1
(현행과 같음)		

②		
	이용료	

제20조(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 제20조(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 수) ① 휴양림의 입장권 및 시 설 이용권은 고정판매소에서 판 매함을 원칙으로 한다.

(2)	<u>이용</u>
<u> 료</u>	
<u>이용료</u>	
제21조(요금표 등 게시)	

와 사용요금 징수 대상 시설 입 --- <u>이용요금</u> ------구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시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입장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- 1. (생략)
- 2.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 족구성원
- 3. 국 · 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
- 4. ~ 8. (생략)

<신 설>

② 휴양림과 연접된 지역인 남 원시 인월면 거주 주민은 입장 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24조(입장료 등의 사용) 휴양림 제24조(입장료 등의 사용) -----의 입장료 및 시설 <u>사용료</u>로 징 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, 인부사역 등의 비 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제22조(입장료 면제) ① 시장은 제22조(입장료 면제) ① -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보

<삭 제>

<삭 제>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<삭 제>

----- 이용료-----

#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- 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시

- 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  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  - 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  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**5천만원 미만**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이 경우
  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 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#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보

의안 번호

제출년월일 : 2016. 9. .

제 출 자:남원시장

제안설명자 : 산 림 과 장

### 1. 개정이유

「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휴양림의 이용시간 조정 (안 제2조)

나. 법률 위임 없이 재정보증 보험가입 의무 부과한 규정 삭제 (안 제8조)

다.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하여 용어의 정의 명확화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산림문화・휴양에 관한 법률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6. 09. . ~ 2016. 09. .(20일간)

- 결 과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규칙 제 호

시

# 남원시 홍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

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(이하 "조례"라 한다)의 시행"을 "시행"으로 한다.

-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용시간"을 "이용시간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3. 숙박시설 : 당일 15:00부터 다음날 13:00까지
  - 4. 야영시설 : 당일 14:00부터 다음날 13:00까지
- 제2조제2항 본문 중 "한하여"를 "한정하여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사용하여"를 "이용하여"로 한다.
- 제3조제1항 중 "제20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20조에 따른"으로, "시설사용료는 휴양림관리·운영자"를 "시설이용료는 휴양림관리·운영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사용"을 "이용"으로 한다.
- 제4조 본문 중 "시설사용료"를 "시설이용료"로, "의한 납입서에 의거"를 "따른 납입고지서로"로, "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"을 "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"의한다"를 "따른다"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

조례 제20조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입장권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단체입장권으로 구분하며, 각종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.

제6조제1항 중 "시설사용권"을 "시설이용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설 사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"을 "시설이용권을 별지 제6호 서식"으로, "시설사용 권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"를 "시설이용권을 별지 제7호 서 식의 발매부에 적어야"로, "1회이상"을 "1회 이상"으로 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를 삭제한다.

휴양림 현장책임자는 휴양림 이용 및 시설이용 실적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흥부골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 중 "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"를 "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"로 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, 별지 제5호 서식, 별지 제6호 서식, 별지 제7호 서식, 별지 제8호 서식,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#### 흥부골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수납일계표

년 월 일

7 7	- 류 구 분		-1 (1)		ul ¬		
종 류		분	단위	수량	단가(원)	금액(원)	비고
계	힙	- 계					
	소	. 계					
	어 른	개 인	명				
	의 는	단 체	명				
입장료	청소년	개 인	명				
	군 인	단 체	명				
	ام احاد	개 인	명				
	어린이	단 체	명				
	소	. 계					
		3~4인용 (23.76㎡)	동				
		5~6인용 (36.54㎡)	동				
시 설 이용료	숲속의집	10~15인용 (66.05㎡)	동				
		15~20인용 (82.85㎡)	동				
	오 토 캠프장		회				
	야영장		회				

흥부골자연휴양림 현장책임자 직 성명 ①

시

[별지 제5호 서식]

## 시 설 이 용 권

	시설이용권 원부	시설이용권		
편	№ 흥부골자연휴양림	№ 흥부골자연휴양림		
철	급 원	급 원	대표적 사진	7cm
부	( )	( )		
보	년 월 일 운영·관리자명의	년 월 일 운영·관리자명의 ※당일에 한하여 유효함		
-2.0c- m	3.0cm	3.0cm	10.0cm	
		(Ž	<b>上</b> 면)	

시설 위치도	유 의 사 항		1	
	- 쓰레기를 줄입시다.		편	
	- 쓰레기를 되가져 갑시다.		철	
	- 휴양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합시다.		부	7cm
	- 산림을 훼손하지 맙시다. - 산불을 조심합시다.		분	
8.0cm	5.0cm	3.0cm	_2.0c_	
J.00m	3.00m	J. J. G.	m	

(뒷면)

※( )안에는 조례 별표 4에 의한 시설명을 내용별로 구분 표시할 것 180mm×70mm(아트지80g/m³) [별지 제6호 서식]

## 흥부골자연휴양림 입장권 및 시설이용권 검인부

년 월 일

시

담당자	관리책임자	ᆲ
		결
		재

종 류	ž	구 분	매수	일련번호	인계인수 일 자	인계자	인 수 자 (휴양림현장) [책 임 자]
계	ï	합 계					
	S	소 계					
	۸ =	개 인					
	어 른	단 체					
입장권	청소년	개 인					
	청소년 군 인	단 체					
		개 인					
	어린이	단 체					
	5	소 계					
		3~4인용 (23.76㎡)					
		5~6인용 (36.54㎡)					
시 설 이용권	숲속의집	10~15인용 (66.05㎡)					
		15~20인용					
	오 토	(82.85 m²)					
	캠프장						
	야영장						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³)

[별지 제7호 서식]

## 흥부골자연휴양림 입장권 및 시설이용권 발매부

년 월 일

담당자	관리책임자	거
		결
		재

종 류	_ 	L 분	매수	일련번호	전 잔	일 량	인수량	발매량	잔 량
계	<u>ह</u> ें	l 계							
	소	: 계							
	어 른	개 인							
	) 어 <del>트</del>	단 체							
입장권	청소년	개 인							
	군인	단 체							
	어린이	개 인							
		단 체							
	소								
		3~4인용 (23.76㎡)							
		5~6인용 (36.54 m²)							
시 설	숲속의집	10~15인용							
이용권		(66.05㎡) 15~20인용							
		(82.85 m²)							
	오 토 캠프장								
	야영장								

[별지 제8호 서식]

## 흥부골자연휴양림 근무일지

현장책임자	관리운영자	결
		' 크 재
		,

- · 년 월 일( 요일) 날씨:
- ∘ 근무자 <sub>┏</sub> 직 : └ 성 명 :
- 이용인원 및 시설이용 실적

	시 설 이 용 실 적							
입장자수	주차장	숲속의집	오토캠프장	야영장	기타			
명	대	동	회	개소	명			
( 맥)	( 매)	( 매)	( 매)	( 매)	( 明)			

※ ( )내는 매표수 기재

∘특기사항

	L											
*	주의	요활동사	항ㆍ시	설보수	및	관리사항	주요인사	방문사항 :	각종	사건	등	기재

[별지 제9호 서식]

## 흥부골자연휴양림 이용실적(월)

종 류	_	· 분	r), (c)	요 금 징 수 내 역			н) ¬
र्ज म	구 분		단위 -	수 량	단 가(원)	금 액(원)	비고
계	ŏ	l 계					
	소	: 계	명				
	어 른	개 인	"				
입장권		단 체	"				
	청소년 군 인	개 인	"				
		단 체	"				
	어린이	개 인	"				
		단 체	"				
	소 계						
시 설 이용권	숲속의집	3~4인용 (23.76㎡)	동				
		5~6인용 (36.54 m²)	"				
		10~15인용 (66.05㎡)	"				
		15~20인용 (82.85㎡)	"				
	오 토 캠프장		회				
	야영장		"				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시

 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남원시	제1조(목적)
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	
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	<u>시행</u>
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	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<u>.</u>
제2조(휴양림 이용시간) ① 휴양	제2조(휴양림 이용시간) ①
림 이용 및 시설 <u>사용시간</u> 은 다	<u>이용시간</u>
음과 같다. <u>다만, 시설물을 사용</u>	<u>&lt;단서 삭제&gt;</u>
하여 휴양림 안에서 숙박을 하	
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숙박시설 : 당일 15:00부터 다
	음날 13:00까지
<u>&lt;신 설&gt;</u>	<u>4. 야영시설 : 당일 14:00부터 다</u>
	<u>음날 13:00까지</u>
② 입장권은 매표 당일에 <u>한하</u>	② <u>한정</u>
<u>여</u> 유효하다. 다만, 시설물을 <u>사</u>	<u>하여</u> <u>이</u>
<u>용하여</u> 휴양림 안에서 숙박을	용하여
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	<u>.</u>
제3조(입장료 징수) ① 조례 제17	제3조(입장료 징수) ①
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	<u>제20조에 따른</u>
장료 및 <u>시설사용료는 휴양림관</u>	<u>시설이용료는 휴양림관</u>
<u>리·운영자</u> 가 징수한다.	<u>리·운영자</u>
② 휴양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	②
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	

보

시설물의 <u>사용</u>을 연중 예약접수 할 수 있다.

시

제4조(요금의 수납) 휴양림현장책 임자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입서에 의거 시금고에 납입하고, <u>별지</u> 제2호서식에 의한 수납일계표 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탁관 리하는 경우에는 별도계약에 <u>의</u> 한다.

제5조(입장권 등의 서식) 조례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입 장권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단체입장권으로 구분하며, 각종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.

제6조(입장권의 인쇄 및 검인) ① 입장권과 <u>시설사용권</u>은 휴양림 관리·운영자가 인쇄한다.

② 휴양림관리·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6호서 식의 검인부에 의하여 휴양림현 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,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입장

<u>이용</u>
제4조(요금의 수납)
시설이용료
따른 납입고지서
로 별지
제2호 서식에 따른
<u>따른다</u> .
제5조(입장권 등의 서식) <u>조례 제</u>
20조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3
호 서식에 따른 개인입장권과
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단체입
장권으로 구분하며, 각종 시설
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
른다.
제6조(입장권의 인쇄 및 검인) ①
<u>시설이용권</u>
②
시설이용권을 별지 제6호 서
<u>식</u>

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 며, 휴양림 관리·운영자에게 월 1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.

시

제7조(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) 휴 제7조(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) 휴 양림현장책임자는 휴양림 이용 호서식에 의한 흥부골자연휴양 림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. 제8조(재정보증) 휴양림현장책임 자는 「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」에 준하여 재정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계 약에 의한다.

제9조(실적보고) 휴양림관리·운영 제9조(실적보고) -----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휴 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 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--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발매부에 적어야 -----

- 1회 이상 ----.

양림 현장책임자는 휴양림 이용 및 시설사용실적 등을 별지 제8 | 및 시설이용 실적 등을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른 흥부골자연휴 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. <삭 제>

---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-

시

#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

### 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- 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  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·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 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의 견 제 출 서							
1. 의견제출 목록			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				
성명(명칭) 2. 제출자		명칭)					
2. 제발시	주	소					
3. 의 견							
4. 기 타					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6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전 화:

시

# 남원시장 귀하

비고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남원시 공고 제2016 - 1153호

시

### 남원시 춘향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원시 춘향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2조 및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09월 09일 남 워 시 장

## 1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O 춘향제전위원장 위촉에 관한 조항의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품격 있는 춘향제를 운영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춘향제전위원장은 시장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인의 추대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함.(안 제4조제2항)
- O 그 밖에 "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"에 따라 수정

### 3. 의견제출

- 가.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붙임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(참조 : 문화관광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사항
  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  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- 다. 의견제출할 곳 : (우)55776 남원시 광한서로 28 남원시 문화관광과(전화 : 063-620-5773, FAX : 063-625-4574)
- 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남원시 홈페이지 (http://www.namwon.go.kr/)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.
- 4. 기 **타** :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청 문화관광과 담당자 류영목(전화 : 063-620-5773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보

의안 번호

제출년월일 : 2016. 9. 제 출 자:남원시장

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

#### 1. 제안이유

춘향제전위원장 위촉에 관한 조항의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품격 있는 춘향 제를 운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춘향제전위원장은 시장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인의 추대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촉 하도록 규정함 (안 제4조제2항)

나. 그 밖에 "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"에 따라 수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

나. 그 밖의 사항

- 1) 입법예고
  - 기 간: 2016. 9. 9. ~ 2016. 9. 29.(20일간)
  - 결 과:
- 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- 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###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시

제4조제2항 중 "위원장은 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과 춘향문화선양회(이하 "선양회"라 한다)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."를 "위원장은 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위촉한다.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선양회"를 "춘향문화선양회(이하 "선양회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위원회"를 "위원의"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"위원"을 "재적위원"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"제7조의 규정을"을 "제7조를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제4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"를 "춘향제 행사에 따른"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

시

- ② 위원장은 남원시장(이하 "시 장"이라 한다)과 춘향문화선양 회(이하 "선양회"라 한다)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. 다만,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도 7명의 추대위원회 를 구성 · 운영하여 위촉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1. 선양회 회원 및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
- 2. · 3. (생략)
- 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 로 하되, 차기 위원회 위촉 전일 까지로 한다. 다만, 위원회 위원 의 임기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(회의) ① ------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 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개 정 안
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(생 략) 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위원장은 남원시장(이하 "시 장"이라 한다)이 춘향문화선양 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 원회를 구성 · 운영하여 위촉한 다. <단서 삭제>
- 1. 춘향문화선양회(이하"선양 회"라 하다) -----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- ----- 위원의 ----

---- 재적위원 ----

2	(3)	( 샜	략)
(4)	(0)	/ O	-

제8조(기획위원회) ①・② (생 제8조(기획위원회) ①・② (현행 략)

③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, 소집 및 의결에 관 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 하다.

제11조(행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제11조(행정지원 등) ① -----제4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 여 예산과 시설대여 등을 직접 지원하거나, 유관 기관 또는 단 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보

과 같음)

(3) -----

제7조를 ----.

춘향제 행사에 따른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보

-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1. 의견제출 목록
- 성명(명칭) 제출 2.

주

소

제38호

자

3. 의 견

4. 기 타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6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전 화:

# 남원시장 귀하

비고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